201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차 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생활
제3장 현장실습
제4장 정보통신
제5장 환경과 안전
제6장 학생지도
제7장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제8장 규정의 개정
[붙임] 교복시방서
[부록1] 학생선도 규정
[부록2] 기숙사 운영 규정
[부록3] 학생회 회칙
[부록4] 학생회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성 및 위원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위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 '는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④ '학생위기관리위원회 '는 부적응학생과 위기관리 대상 학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장 학생생활

- 제5조(기본품행) 학생들은 공동체생활을 위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제6조(수업시간)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제7조(수업 외 시간) 학생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켜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타인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0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학교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 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폭력전담교사
- 3.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
- 4.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5. 교내에 설치된 학생생활 신고함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제1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제13조(동아리활동)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체험활동 담당부서 에 등록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동아리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5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환경정돈, 학습분위기 조성에 노력봉사 한다.
 - ② 청소 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용의복장)
 - ① 학생들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복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복은 붙임의 교복 시방서를 참고한다.
 - 2. 체육시간에는 수업에 맞는 체육복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③ 두발 및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염색, 파마는 하지 않도록 한다.
 - 2.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 3. 방송출연, 공연 참가, 기타사유(미용 등의 자격증 취득, 미용실습 등)로 인한 두 발의 변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생안전부의 허락을 받는다.
 - 4. 두발 변형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두발규정을 준수한다.
- ④ 용모 및 장신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용모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색 입술 보호제,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 2. 반지, 팔찌,목걸이, 귀걸이, 피어싱 등의 착용은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다.
 - 3. 유색렌즈 또는 써클렌즈 착용은 금지하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 소견이 있을시 착용할 수 있다.
- ⑤ 신발 및 가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뾰족한 굽, 금속 장식 등)
 - 2. 실내화(슬리퍼 등)는 교내 허용 지역에서만 착용한다.
- 3. 가방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하되, 교과서가 들어가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기숙사 생활) 기숙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19조(출결사항)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 및 교육부훈령을 바탕으로 하는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출결사항' 부분을 따른다.
- 제20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주 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등) 등을 소지하 거나 반입하여도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 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비행현장 등에서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제21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취업을 하지 않는다.
-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장 현장실습

제23조(현장실습 준수사항)

-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2.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4.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5. 각종 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6.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24조(보호자 협조사항)

- ①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 ②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하여 협의하다.

제4장 정보통신

- 제25조(사이버 생활)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잘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26조(기기 관리) 본교 학생들은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잘 관리한다.

제5장 환경과 안전

제27조(음식물)

-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식사 전 또는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28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 1. 일반쓰레기
- 2. 재활용품

- 3. 음식물쓰레기
- 제29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 2.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3.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 4.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제6장 학생지도

- 제30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교통 지도 반을 유영할 수 있다.
- 제31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 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 제3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7장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제33조(기간)

- ① 연간 10일 이내로 한다.
- ② 1회당 휴일포함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재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정기고사 및 성적과 관련된 교내 고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4조(내용)

- ① 가정의 경·조사 및 행사
- ② 부모와 함께 하는 여행
- ③ 여행, 가정행사 기간의 출석 일 수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 ④ 자연탐사 및 학력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체험을 필요로 할 때

제35조(추진절차)

① 보호자의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실시 3일 전)

- ② 학교장이 협의 후 허가
- ③ 보호자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실시 후 첫 등교일)

제36조(결과 처리)

- ①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토론회, 체험록 작성 등 다양한 발표 기회 제공
- ② 학급담임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상담을 통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실제 이행여부 를 확인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 있을 경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복 시방서

■ 남자 동복 ■

구분	상 의	특 징	
	의 IIII 의 부자	▷디자인 *카라 집업 점퍼 *가슴에 와펜부착 ▷국내산 원단 *(소재)차쿌/폴라폴리스 양면 본딩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100%	
		▷디자인 *상 아우트 주머니 *자주색 넥타이 ▷국내산 원단 *(소재)백색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남		▷디자인 *브이 넥 니트 가디건 ▷국내산원단 *(소재)진회색 *섬유혼용률(아크릴 50%+울 50%)	
		▷디자인 *슬림,0-TUCK ▷국내산 원단 *(소재)진회색메란지 *섬유혼용률(울59%+폴리에스테르39%+폴리 우레탄2%)	

■ 여자 동복 ■

구분	상 의	특 징	
	아 IIII 마차	▷디자인 *카라 집업 점퍼 *가슴에 와펜부착 ▷국내산 원단 *(소재)차콜/폴라폴리스 양면 본딩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100%	
		▷디자인 *기본 각 카라 블라우스 *자주색 넥타이 ▷국내산 원단 *(소재)백색 *섬유혼용률(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석		▷디자인 *브이 넥 니트 가디건 ▷국내산원단 *(소재)진회색 *섬유혼용률(아크릴 50%+울 50%)	
	3.5cm	▷디자인 *요크아래 양쪽 외주름 3개씩 *와끼 양쪽 콘솔지퍼 *(앞판 중앙)흰색+회색체크가 가운데 오도록 *(뒷판 중앙)흰색+회색체크가 양쪽에 위치 *앞/뒤 요크:삼각형 중앙이 주름 중앙에 위치 ▷국내산 원단 *(소재)흰색+회색 체크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 여학생 하 . 동복 바지 착용 가능 : 하.동복 치마와 동일 색상 및 정장 규격 준수

■ 남녀 하복 ■

구분	상 의	특 징	
남		▷디자인 *상 아우트주머니 *아우트주머니,소매 0.3CM 파이핑 배색 *단작 배색(굴림) ▷국내산 원단 *(소재)아이보리 *섬유혼용률(폴리에스터75%+레이온25%) *(배색1)밤색+검정 체크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배색2)밤색무지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디자인 *슬림,0-TUCK ▷국내산 원단 *(소재)밤색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۵į		▷디자인 *상 아우트주머니 *아우트주머니,소매 0.3CM 파이핑 배색 *단작 배색(굴림) ▷국내산 원단 *(소재)아이보리 *섬유혼용률(폴리에스터75%+레이온25%) *(배색1)밤색+검정 체크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배색2)밤색무지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6"	▷디자인 *좌우 맞주름 2개 ▷국내산 원단 *(소재)밤색+검정체크 *섬유혼용률(울60%+폴리에스터40%)	

※ 교복 시방서 규정 준수 및 교복 규격 변경 금지

학생선도 규정

제1장 학생선도위원회

제1조(구성 및 의결)

- ① 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단,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심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본 위원회는 학교에 조직된 학교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한다.
-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기능)

- ① 본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단,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생활안전부장, 학교장의 결심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본 위원회의 세부 기능은 제3장 징계에 의한다.

제2장 상벌점제

- 제3조 (목적)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 하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 제4조 (운영) 학생생활 중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다양한 상점활동을 통하여 벌점을 상쇄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상벌점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년단위로 누적 관리하며,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생활지도 상.벌점제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3장 징계

제5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조(징계의 심의)

-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의 봉사'는 3일~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②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한다.
 - 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내의 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②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③ 상품권(일일찻집 티켓 등)을 제작, 판매한 학생
- ④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⑤ 위험 물품을 소지한 학생
- ⑥ 인장(서명)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⑥ 흡연 또는 음주,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학생
- ⑦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⑧ 제78조 상벌점 운영 누계 점수 30점 이상인 학생
- ⑨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0조(사회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제85조의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수업을 거부한 학생
- ③ 시험을 거부한 학생
- ④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⑥ 상습적으로 흡연 또는 음주,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학생
- ⑦ 부당하게 금품(물품 등)을 갹출, 절취, 강탈, 사취한 학생
- ⑧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⑨ 학교 내의 봉사 징계를 받고 미 이수한 학생
- ⑩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1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제86조의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불건전한 영상물, 출판물을 소지 또는 시청,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 ③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 파손한 학생
- ⑤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⑥ 학생들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⑦ 무면허로 차량 및 원동기를 운전한 학생
- ⑧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⑨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고 미 이수한 학생
- ⑩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2조(출석정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① 제87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교실 및 복도, 기숙사 내 흡연 또는 음주
- ③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④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⑤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3조(퇴학 처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② 교사에게 반항, 욕설 등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③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④ 출석정지 기간 중 반성의 기미가 없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
- ⑤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4조(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내의 봉사'는 교내에서 담당교사의 봉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1. 학교 환경 및 미화 작업
 - 2. 교원의 업무 보조
 - 3. 교재 교구 정비
 -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인정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 1. 행정기관 위탁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기타 업무보조 등
 - 2. 공공기관 위탁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기타 업무보조 등
 - 3. 사회 복지기관 위탁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곳에서의 위탁봉사
 - 5. 사회봉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학교장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 장

소는 당해 학교(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한다.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이수
- 2. 교육감이 위탁한 금연학교, 약물 중독 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3. 행동, 심리 상담치료 교육기관 및 의료 치료기관 교육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교육이수
- 5.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이수
- 6. 특별교육 이수 후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며, 1회 10일 이내로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 1. 출석정지 기간 동안 출결 처리는 무단결석으로 한다.
 - 2.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한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 또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 기간 종료 후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다.
- ⑤ '퇴학처분'은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 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 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로 일정기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절차) 징계 심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 학생생활안전부 및 담임교사의 사실조사를 근거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교내봉사는 제9조 각항에 대해 학생생활안전부장의 건의를 받아 학교장이 선도위원회 개최와 관계없이 시행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체 교무회의에 회부하여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16조(징계내용 통보 및 재심요구) 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장 재심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을 명하거나 전체 교무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선도위원장은 즉시 선도위원회를 재소집하거나 전체 교무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할 때는 재심요구사항을 선도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재심의결은 선도위원회 위원 3분의 2 찬성, 전체 교무회의에서는 재직교사 3분의

-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재심의결 사항은 특별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이를 수용한다.
- 제18조(징계학생 행사 참여 및 고사 응시) 징계중의 학생을 각종 교내 행사(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체육대회, 축제, 야영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행사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19조(징계경감 및 사면)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정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사면할 수 있다. 단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다.
- 제20조 (징계연장) 학교장은 징계를 받는 학생이 징계기간 중 개정의 가망이 없거나 불성실한 경우 교무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강화,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 (정상참작) 본 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자로서 평소 품행이 바르고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 실수로 개정의 정이 뚜렷하여 그 정상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은 특별히 경감 징 계할 수 있다.
- 제22조 (가중처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중 징계할 수 있다.
- ① 동 학년간의 동일 징계를 3회 이상 시는 선도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② 동 학년간의 사회봉사 2회 이상 이거나, 징계지도 불응 시에는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수혜중지 및 제한 해제)

- ①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일 때는 즉시 해임하고 장학생일 경우는 수혜를 중지한다.
- ② 사면을 통하여 포상 및 자격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해제)

- ① 징계경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한다.
- ② 징계 해제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징계해제와 동시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추수지도)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진로상담과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교육기관 및 직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 제26조(징계말소)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대외에 크게 선양하거나, 모범, 효행학생으로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사유가 재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을 얻어 징계사항을 말소시킬 수 있다.

<상점 발급기준>

구분	항목 번호	지도 내용	상 점
교내외 생활	1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표창장등 근거자료 제출시)	10
	2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수시)	5
	3	도우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수시)	5
	4	헌혈한 경우(매회)	5
	5	교실, 학교주변 청소에 솔선수범하는 경우(수시)	5
	6	선행을 베푼 경우(수시)	10
	7	모범상을 수상한 경우(수시)	5
	8	수업태도가 우수한 경우(수시)	5
	9	기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연중)	0~10

<벌점 발급기준>

구 분	항목 번호	지도 내용	벌 점
	1	실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뛰어다니는 행위	3
	2	침을 아무데나 함부로 뱉는 행위	3
예절 및	3	언행이 불손한 행위	10
공중도덕	4	용의가 단정치 못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경우	3
0041	5	실내외 쓰레기(휴지, 껌 등) 투기 행위	3
	6	식당에서 끼어들기 행위	3
	7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외출, 무단조퇴 각1회	5
준법	9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대로에서 무단횡단 등)	5
正 百	10	학생 단체 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
	11	주번 또는 청소당번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수업태도	12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미비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10
十百네고	13	수업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14	파마, 염색을 하는 행위(1주일마다)	10
	15	장신구(귀걸이, 피어싱 등)를 착용하는 행위	5
두발 및 복장	16	문신을 하고 다니는 행위	10
	17	교복 미착용	3
	18	색조 화장	5
자율학습	20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5
	21	자율학습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22	자율학습 장소 무단이탈 행위	5

※ 기 타

- 1.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2주간 보관한다.

기숙사 운영 규정

2018년 4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기숙사 운영 규정이라 한다.(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① 자율적이며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하고, 민주시 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미래세계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 ②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 제3조(운영위원회 조직)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1.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2. 위원의 구성은 행정실장, 기숙사운영 담당부장, 각 학년 부장, 학부모 위원 4명으로 한다.
 - 3. 행정실장은 재정사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관리, 기숙사 직원관리, 위생시설, 구급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4.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 ② 위원회의 직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숙사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항
 - 2. 기숙사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생의 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중요사항
 - ③ 회의 :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조(사감) 기숙사의 사생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운영 담당부장을 두며, 기숙사 운영 담당부장의 명을 받아 사감이 기숙사운영 담당부장의 의무를 수행한다.
 - ① 임명 : 기숙사운영 담당부장은 학교장이 교사 중에서 임명하고, 사감은 학생지도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공개 전형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의무 및 직능 : 기숙사 운영 담당부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관장하

고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사감은 다음 각 호를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 2. 사생들의 보건 위생 및 각종 안전 관리
- 3. 기숙사 시설 및 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생 급식에 관한 사항 확인 및 상.벌점에 관한 업무
- 5. 사생 점호 및 호실 점검에 관한 사항
- 6. 일과 후 외출, 외박에 관한 사항
- 7. 기숙사 일지 작성
- 8.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숙사생 자치위원회) 기숙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숙사생 간의 우의 도모, 생활의 편의와 내실화를 위하여 기숙사생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장 1명과, 학년 대표 1명, 학년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개사 기간으로 한다.
- ② 선출 및 임명 : 임원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전체 사생의 선거를 통하여 입사 초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무 : 자치회의 임원은 기숙사 운영 담당부장과 사감의 감독을 받으며 다음 임 무를 수행한다.
- 1. 자치회장 : 사생을 대표하고 사감의 명을 받아 사내 생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2. 학년 대표 : 각 학년의 사생을 대표하며 자치회장을 보좌한다.
- 3. 학년위원 : 학년대표를 보좌하며, 효율적인 사내생활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 ④ 기능 :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의 결과를 즉시 사감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 1. 사내 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생의 화합과 친목에 관한 사항.
 - 3. 사생의 면학 분위기의 조성.
 - 4. 사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자치위원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6조(입사 자격)

- ① 본교의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 ② 특별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서 심사 . 결정한다.
- 제7조(입사 등록)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서약서와 건 강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퇴사)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입사 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 다.
 - ① 가정 사정 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자
 - ② 학교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③ 위원회에서 퇴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④ 법정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⑤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4장 사생의 의무와 책임

- 제9조(사생의 의무) 사생은 기숙사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을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의무)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① 건물 또는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 ②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 ③ 화재 및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 ④ 외부인 무단 출입자가 발생하였을 때
 - ⑤ 귀사가 늦을 때(사전 보고)
 - ⑥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5장 기숙사 생활수칙

- 제12조(개사 기간 및 시간) 기숙사의 개사 기간 및 시간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 단축 또는 휴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절 및 생활)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생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자기 계발 및 인격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②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며 세계화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의 긍지와 애교심을 가진다.
- ③ 사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학부모, 내방 객 등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상.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④ 사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용모, 복장, 자세)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 ⑤ 사생은 기숙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남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가 한다.
- ⑥ 사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 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⑦ 사생은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 ⑧ 사생은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⑨ 사생은 학교 일과 후의 자유 시간 동안에는 휴식, 자율학습,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활동(학예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⑩ 기숙사 호실 내에서는 운동, 오락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① 숙면을 통한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공통 수면 시간(평일 23:00 06:20, 휴일 24:00 08:00) 을 정하고, 공통 수면 시간에는 일체의 이동을 금지한다. 특히, 공통 수면 시간에는 세면장, 세탁실, 샤워장도 이용하지 않는다.
- ② 절도, 음주, 흡연, 유해약물 복용, 폭행, 금품갈취, 사기, 강탈,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③ 불건전한 오락 및 도박행위를 금하며, 화투 등의 도박 도구의 소유를 금지한다.
- ⑭ 여학생의 남학생 호실 출입 및 남학생의 여학생 호실 출입을 금지한다.
- ⑤ 외부인 또는 비사생에게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⑩ 실내에서는 최대한 우측통행 및 정숙 보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익일 아침 점검 또는 청소 시간에 발견된 세면장 또는 샤워장 등에서의 도서류 및 의류는 쓰레기 처리한다.
- ® 외부 음식물(과자 등) 반입을 엄금한다. 단, 특별 사유 발생 시에는 기숙사운영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한다.
- ⑲ 숙면시간 확보를 위하여 점호 시간 이후 호실 내에는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용모, 복장, 언어, 태도)

- ①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맨몸으로 다니지 말아야 하며 기숙사에서도 속옷차림 또는 민소매 옷 복장으로 다니지 않는다.
- ② 복장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세탁하여 품행이 불량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한다.
- ③ 실내화를 착용하고 운동장이나 학교 밖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 ④ 인사는 목례로 맑고 명랑하게 한다.

제15조 (식사)

- ①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해야 하며 기숙사 내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 ②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 ③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 받아서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점호)

- ① 학생은 매일 아침 기상 후, 저녁 취침 전 점호를 받는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생은 점호 시 인원, 복장, 청소,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
- ④ 학년 대표는 점호 준비를 하고, 점호 시 인원 및 특이 사항(환자 등)을 보고한다.
- ⑤ 아침 점호 시에는 침구정리 및 호실 창문(우천 등 이상 기상 시 제외)을 개방한다.
- ⑥ 실외 점호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운동 가능한 복장으로 한다.
- ⑦ 점호 무단 불참 및 지각 인원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 사용)

- ① 기숙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② 호실의 집기(침대, 옷장 등)는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학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③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 찌꺼기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 지 않도록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 ④ 화장실의 화장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⑤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 ⑥ 공동사용 비품과 신발장, 휴지통 등을 파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호실원 전원 또는 당번에게 변상 적용하고 침대, 개인 옷장 등 개인 물품은 개인이 관리 책임을 진 다.

- ⑦ 기숙사 내에서 본인이 간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 분실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 ⑧ 각 실 사용 후 정돈과 청결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적용한다.
- ⑨ 공동 공간은 호실원 전원에게 책임을 적용한다.

제18조 (호실 생활)

- ① 호실의 대표를 선발하여 호실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호실장은 호실 학생을 대표한다.
- ② 침구류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③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 옷장의 각종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전원스위치를 끈다.
- ④ 일체의 취사 행위, 음식물 저장 및 취식 또는 외부음식 반입 행위를 엄금한다.
- ⑤ 호실 내.외벽, 개인 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 부착 및 낙서 행위를 금지한다.
- ⑥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창문이나 개인 옷장 등의 시건 장치를 상시 확인한다.
- ⑦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 ⑧ 휴지통은 호실 내에 위치하고 1일 1회 이상 | 워서 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물로 청결히 하여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 ⑨ 개인 옷장, 침대 밑 등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⑩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 ⑩ 호실 내에서 생일 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 ⑩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 ⑬ 호실에서 공놀이 행위를 금하고 축구, 농구, 배구공 등의 공류는 반입을 금지한다.
- ⑭ 마지막 출입 인원 또는 당번은 항시 소등을 확인한다.

제19조 (호실 점검)

- ① 호실 점검 시 창문 시건, 소등, 정리정돈 상태가 마무리 된 후 점검 받아야 한다.
- ② 호실 점검은 수시 또는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③ 호실 점검 결과는 호실 구성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상.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주요 점검 사항은 침구류, 개인 옷장, 옷걸이, 청소 도구 정리정돈, 소등 상태, 창문 개폐.시건 상태 등을 점검한다.
- ⑤ 호실 점호 및 점검 시 불량자는 자율학습, 자유 시간 또는 정규 학습시간이라도 학급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정,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호실 점호 및 점검 결과 누적 점수는 모범 사생 또는 우수 호실 선발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취침)

- ① 옷을 벗어 가지런히 정돈한다.
- ② 취침 중 필요한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 ③ 취침 중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④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기숙사운영 담당부장 또는 사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 ⑤ 불을 끈 후 취침하지 않고 개인 용무나 담화는 하지 않는다.
- ⑥ 취침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야간 점호 이후 타 호실 방문을 엄금한다.

제21조 (외출 및 귀가)

- ① 외출 : 외출은 담임 혹은 당직교사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② 귀가
 - 1.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출타를 말한다.
 - 2.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담임 혹은 당직교사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 3. 의무 귀가는 금요일 일과 후부터 다음 등교 전 일 20시까지로 한다. (단, 방학 중 귀가는 예외로 하며 학사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③ 기타
 - 1.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숙사운영 담당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 2.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미복귀로 간주한다.
 - 3. 기숙사운영 담당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외출 및 귀가를 통제할 수 있다.
 - 4. 외출 및 귀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

제22조 (면회)

- ① 면회는 기숙사 운영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② 면회는 일과 후 시간에 학교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면회자의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한다.
- ④ 면회자로부터 받은 음식을 호실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 ⑤ 면회 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당직 교사에게 보고 후 면회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보고한다.
- ⑥ 면회 장소는 교내로 제한하며 특히 면회자가 기숙사내로 출입 시 사전에 당직

교사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보건위생)

- ① 상비약은 사감실에 비치한다.
- ② 상비약은 간단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상황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③ 상비약 사용 기준은 보건교사의 지침에 의한다.
- ④ 긴급 환자 발생 시 긴급 환자 대처 메뉴얼을 따른다.

제6장 징계

제24조 (징계) :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

- ① 경고 :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② 일시퇴사 : 누계 벌점이 25점 이상인 경우, 3일 이상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퇴사 조치 및 반성문을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위원회에 위임한다.
- ③ 영구퇴사 : 일시퇴사 징계 2회 도래 시 혹은 단체 생활을 저해하는 사안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영구퇴사 조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상기 1, 2, 3에서 누계 점수가 15점 미만인 상태에서 당일 벌점 추가로 인해 누계 점수가 2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전 경고 단계 없이 일시 퇴사 조치할 수 있 다.

제26조 (벌점의 차감) 다음의 경우에는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 ① 입사자가 다음 학년으로 진급 시 누계 벌점은 소멸된다. 단,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폭력·이성 교제·12월 이후 부과된 벌점, 3회 이상의 상습적인 행동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의 벌점은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차감하지 않거나, 1/2로 차감할 수 있다.
- ② 일시 퇴사 징계 시 25점을 차감한다.
- ③ 지도교사(기숙사 담당부장, 담임 등) 및 사감은, 기숙사에서 모범을 보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수행한 사생에게 1회 3점 이내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 제27조 (벌점 사항):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며, 그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혹은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 규정 위반 벌점 기준>

(2018.3.)

연번	위 반 사 항			비고
1	기숙사 미 복귀시			30분마다 2점
2	취침 시간 이후 티	- 호실 출입	5	
3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불량	3	
4	기숙사 무단출입 5	및 무단 외출	5	
5	담당구역 청소 불여	이행	2	
6	점호 불참		3	
7	승인 없이 외부 음식물 배달 및 반입			
8	사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10	인화물, 주류, 담배, 흉기, 화투류, 중량 운동기구, 음식물, 전열기구, 음란서적 등.
9	야간 소란 행위(취침 시간 이후 타인 수면 방해자 포함)			
	이성 교제로	손잡기, 팔짱끼기, 허가 없이 밀폐된 공간 에 이성이 함께 있을 시	5	
1.0		포옹	10	
10	풍기를 문란케 함	입맞춤	15	
	는 년/W 급	성행위, 유사성행위	25	
		기타	2~25	
11	정해진 시간, 장소	이 외의 출입	20	
12	고의로 기물 파손		10	
13	지도교사, 사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15	
14	타인의 물건을 훔침		20	
15	흡연(금연초 및 유사 담배류 포함), 음주, 도박 행위		20	
16	본드 흡입 및 환각성 약물을 복용		25	
17	허가 받지 않은 기숙사 내 파티		10	해당자 전원
18	호실 내 휴대폰, 노트북 사용		10	
19	기타 항목에 없으나 기숙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		1~25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벌점적발 물품(전자기기, 운동기구 등)은 사감부장 또는 사감이 <mark>압수 또는 폐기</mark>할 수 있다.

- 1. 경고 :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고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 **2. 일시퇴사**: 누계 벌점이 25점 이상인 경우, 3일 이상 10일 이내(공휴일 제외) 퇴사조치한다.
- 3. **영구퇴사** : 기숙사 생활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영구퇴사 조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학교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 4. 상기 1,2,3에서 누계 점수가 15점 미만인 상태에서 당일 벌점 추가로 인해 누계점수가 2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전 경고 단계 없이 일시 퇴사 조치할 수 있다.
- 5. 벌점 상세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숙사운영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하면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을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기숙사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학생회 회칙

- 제1조(목적) 본 회는 자율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회는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생회 "라 칭한다.
-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권리 및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 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5조(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기능)

- ① 이 회는 제2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1. 학예, 체육, 특기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의 봉사활동
 - 5.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본분에 맞게 이루어 져야하며 사전에 학생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임원 구성 및 기구)

- ① (임원) 임원은 학생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1학년 1인, 2학년 1인), 서기 1인 과 각 부서별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회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학교 활동을 주도한다.
 - 1. 총무부 : 사업 계획 작성 등 학생회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각종 행사 총괄
 - 2. 봉사부 : 교내.외 봉사활동 및 축제 등 봉사활동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사항
 - 4.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확립과 학교정화에 관한 사항
 - 5. 학예부 : 학교축제행사 및 문예활동에 관한 사항

④ (기구) 본 회의 기구로는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회, 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9조(임원의 임무)

- ① 학생회장은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표하며 학생회를 관장하고 학생회 운영 전반을 주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 ③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 ④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대의원회)

- ① (구성) 대의원회는 당연직 대의원인 학생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각 학급 반장 및 부반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임무 및 활동)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 결한다.
 - 1. 학생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율생활규정의 심의 후 건의할 수 있다.
 - 3. 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 4. 각 학급회, 운영위원회, 지도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 5. 학생회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대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④ 정기 회의는 학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재적 대의원 ½ 이상의 요구와 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대의원회는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36조 ①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학생회장, 부운영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서기와 각 부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 ② (임무 및 활동)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1. 제안된 의안 채택에 관한 심의
 - 2. 회의 소집 일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일
 - 3. 전체 학생회에서 심의 의결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일
 - 4. 지난 회 의결 사항 실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 활동 등
- ③ 정기 회의는 학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½이상의 요구와 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도위원회)

- ① (구성)지도위원회는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②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6.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학급회)

- ① (목적)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상담과 친교 활동을 통하여 즐겁고 안정된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진로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구성) 반원 전체로 구성하며 학급 반장과 부반장, 서기 및 부서별 부장 각 1인을 임원으로 둔다.
 - ③ (부서)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어 학급 생활에 필요한 일을 분담한다.
 - 1. 학습부 : 학급의 학습자료 준비, 학급도서 관리 , 학급의 문예활동 준비 및 추진
- 2. 생활부 : 학급의 아침자습 준비 및 추진 , 체육활동 준비 및 추진 , 건강상태 파악
 - 3. 봉사부 : 학급의 봉사활동 추진 , 환경게시물 관리 , 책 .걸상 및 청소용구 관리
- 4. 정보부 : 학급의 유인물 관리 , 취업 및 진학자료 관리 , 자격검정 안내 및 추진 제14조(학급회 임원의 임무)
 - ①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담임의 지시를 받아 제반 일을 추진한다. 그리고 학급회의 의장으로 학급회를 진행하며, 반원의 의견을 담임에게 건의하고 학생회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②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서기는 학급회의 일지를 작성하여 담임의 결재를 받고, 학급회의 시 서기를 본다.
 - ⑤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한다.

제15조(학급회 임원의 선출)

- ① 학급대의원(반장과 부반장)은 반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하다.
- ② 총무, 서기 및 각 부의 부장은 반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담임이 임명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대의원이 될 수 없다.

- 1.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이수중인 자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징계 이수중인 자
- ④ 반장 및 부반장은 겸할 수 없다.
- ⑤ 학급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을 경우, 학급대의원직은 같은 반의 다른 학생에게 위임되어야한다. 이 때 위임 방식은 재선거를 통해 위임하도록 한다.

제16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담임교사의 결정에 따른다.

학생회 선출 규정

제1조(임원의 선출)

- ① (입후보) 교사와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 1인, 부회장 2인은 입후보자 중 전체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대한 제반 사무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선거 사무 종료와 함께 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3학년), 부위원장 1인(2학년),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5. 당선일 결정에 관한 일
 - 6.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처분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④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생활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공고하며, 학교 게시판에 공고물을 부착한다.

제4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과 임기)

- ① (자격)학생회장 1인은 선출일 현재 3학년 재학생, 부회장 2인은 선출일 현재 본교 1,2학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선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
 - 2. 지휘 통솔력이 있으며,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 교칙을 위반하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②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6조(피선거권 자격제한) 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회 임

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①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이수중인 자
-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징계 이수중인 자
 - ③ 회장 및 부회장은 겸할 수 없다.
- ④ 학급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을 경우, 학급대의원직은 같은 반의다른 학생에게 위임되어야한다. 이 때 위임 방식은 재선거를 통해 위임하도록 한다.

제7조(선출자의 자격상실) 학생회 대의원 및 임원이 제43조의 피선거권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교무업무시스템의 학급명렬표(또는 출석부 사본)를 투표자 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서(유권자 10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고 담임교사가 확인)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무효 및 사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및 제11조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동록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사퇴,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한다.

제12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3. 학부모동원 선거운동, 지정 시간외 선거운동과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무효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에게 설명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벽보)

-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4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길이 60cm, 너비 42cm 정도(A2규격)로 작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14조(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및 공약사항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전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결정한다.
-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5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 ⑤ 투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 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 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16조(개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한다.
 - ② 개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 한 것.
 - 4. 어느 난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 기표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기표한 것이 복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제17조(당선인 결정)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득표수와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의원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단일 후보 등록 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18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등록한 후보자의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한 때
 - 2.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 때
-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5. 단일 후보 등록 후 찬반투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에 해당하지 않을 때 또는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을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사고 등으로 유고 시에는 학생회 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0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내에 학생생활안전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생활안전부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4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보칙)

- ① 지도위원회의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④ 이 규정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